경영유의사항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케이에스넷

2. 조치일 : 2016. 11. 22.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4. 경영유의사항

(1) 단말기 관리시스템 강화

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2015.7.21.) 이후 미등록단말기의 전산등록이 거절되도록 시스템을 개편('15.7.27.)하였으나, 동 시스템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 ㈜케이에스넷 및 동사 소속의 가맹점모집인(■■■■■ 등 253개)이 '기존 가맹점'을 대상으로 3,477대의 미등록단말기를 신규로 설치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등록단말기의 출고를 제한하는 등 단말기 입출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스템상 '기존 가맹점'에 대하여도 미등록단말기의 전산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말기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단말기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단말기 개통 관련 계약서 작성·관리 철저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모집인을 통해 단말기 설치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모집인에 의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수집·보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밴서비스 제공시 표준화된 계약서 없이 가맹점모집인별로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토록 하고 있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가맹점모집인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 가맹점모집인에 의해 불필요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가맹점모집인이 무단으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계약서를 임의 보관하지 못하도록 자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동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3) 내부감사제도 운영 등 내부통제 강화 등

내부감사제도 수립·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내부통제업무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기준 및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가) 내부감사기능 강화

① 내부감사 업무(일상감사, 사전감사, 종합감사 등)를 수행한 실적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업무가 외부의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되는 외부감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계감사(■■회계법인)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주주(NET1)가 별도로 지정한 감사법인(◆◆회계법인)에 의한 별도 감사를 받고 있음

앞으로 외부감사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감사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업무분장표상 감사업무 주관부서를 경영기획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감사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내부감사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바,

*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및 감사직무규정 등

앞으로 감사범위, 의무, 권한, 방법 및 감사대상 등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화하여 실질적인 내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련 제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③ 내규「모범규준 운용지침」에 의하면 규준관리자는 모범규준 준수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후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고서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범규준 준수 실태 등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사고예방대책 강화

① 결재문서에 대한 접근권한이 문서 작성자 및 전결권자로 제한되어, 감사 등 내부통제조직이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바,

앞으로 감사 등 내부통제조직이 회사의 전체 내부 결재문서를 열람하도록 하여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적시에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조직에게 문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② 주요 인장에 대한 전·후임자간 인수인계시 인장관리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창고(경기도 ◘◘시 소재)에 보관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에 대한 재고관리·실사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재고자산 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주요 인장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단말기 등 재고자산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접대비 관련 내부통제 강화

2015. 2.24.~2015.11.15. 기간 중 우수 밴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해외골프 및 관광을 실시(총 8회, 4억 13백만원)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전 문서품의절차도 없이 경비를 선지급하거나 매 행사시 내부직원을 참여(약 6~10명)하도록 하는 등 접대성 행사를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경비를 집행하고, 사전품의 및 전결권자의 전결을 득한 경우에만 경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등 경비 집행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